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42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이주희 · 최혁진 · 박정현
한준호 · 문진석 · 김우영
김 윤 · 노종면 · 허성무
김남국 · 임미애 · 임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의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8의 제목 중 “보호”를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를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대화형정보통신 서비스”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2.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의 표시
3. 이용시간 경과 내역의 표시
4.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방법·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5. 그 밖에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및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의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7호”를 “제2호의7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7.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에서의 아동 <u>보호</u>)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 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 반으로 하는 <u>정보통신서비스</u>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 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에서의 아동 <u>보호 등</u>) ① ---- ----- ----- ----- ----- ----- <u>정보통신서</u> <u>비스(이하 이 조에서 “대화형</u> <u>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u> ----- ----- ----- ----- ----- --.
<신 설>	②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u>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u> <u>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u> <u>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u> <u>능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정</u> <u>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u> <u>에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u> <u>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u> <u>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u>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u>

<신 설>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6. (생략)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2.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의 표시
 3. 이용시간 경과 내역의 표시
 4.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방법
·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5. 그 밖에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 절차 및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의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호의7 및 제7호-----

-----.

1. ~ 2의6.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 12. (생 략) ③ ~ ⑤ (생 략)	<u>2의7.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u> <u>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u> 3.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